

HANYANG UNIVERSITY

2021-1학기

# 국가장학 1,2유형 2차 신청 안내



# 2021-1학기 국가장학금(유형 1,2) 2차 통합신청 및 지급 안내

## I. 국가장학 주요 개편 안내

### 2018학년도부터 국가장학 지원 확대

- 셋째를 포함한 모든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
-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
- 기초.차상위 성적기준을 C학점(성적 70점~79점)으로 완화,
-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

#### ■ 제도개선 사항 안내

- 2018-1학기부터 소득·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,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
  - ※ 단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, 소득·재산, 가구원, 학적,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·재산 재조사 실시
- 2019-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신청서 제출 기회 확대(기존 1회 → 2회로 증가)
- 2019-2학기부터 다자녀장학금의 연령 제한 폐지( '88년 이후 출생자 → 나이제한 폐지)

## II. 유의사항

###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.

#### 1. 2016-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.

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2016-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시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 단계에서 **재단거절**로 탈락됩니다.

단,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학생은 **2회에 한해**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을 허용합니다.

\*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학생은 최종심사 거절

2차 신청 대상자	비고
복학·재입학·1차 미신청 재학생(구제신청한 자 한함)	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통해 지원 (2회에 한함)

#### 2.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는 재학생 중 ①재외국민 특별전형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학생 및 가구원입니다.(2020학년도 신입생도 적용)

#### 3. 신고대상자는 국외 소득을 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재외국민 국외소득 재산 신고제 안내문 필독

재외소득재산 신고제 주요 FAQ 필독 <http://www.kosaf.go.kr>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)

**특히 교내 가계곤란 장학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.**

1. 학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(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)
  - 특히, **가계곤란교내장학(사랑의실천, 실용인재장학)**은 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
  - ※ 성적미달 및 등록횟수 초과로 국가장학 선발이 안되더라도 소득분위는 **교내장학 및 교외장학 선발에 필수조건**으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 확인

**교내 전액장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.**

1. 국가장학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시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.
 

장학규정에 의거 교내전액장학생(신입학, 한양브레인 등)이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국가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을 지급합니다.

예) 국가장학 2,600,000원 + 공과대학 신입장학 4,630,000원(전액)  
     ☞ 국가장학 2,600,000원 + 2,030,000원(신입학장학)

- ※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필독 [바로가기](#)
- ※ 국가장학금 FAQ 필독 [바로가기](#)
- ※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독 [바로가기](#)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)
- ※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[바로가기](#) 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)

**Ⅲ. 국가장학 주요 일정**

1. 신청기간 : 2021. 2. 3(수) ~ 2021. 3. 16(화) 18시
2.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: 2021. 2. 3(수) ~ 2021. 3. 18(목) 18시
3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
**Ⅳ. 국가장학 1,2유형 통합 신청 대상자**

1. 대한민국 국적자이며
2. 2021-1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신(편)입생, 복학생, 재입학생, 1차 미신청 재학생(구제신청자에 한함)
  -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
  -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
    - ※ 신청제외자 : 2021-1학기 휴학예정자(등록 후 휴학자는 휴학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팀 연락)  
2021-1학기 무등록 복학생 중 휴학학기에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(이중수혜 선정불가)

**Ⅴ. 국가장학 1,2유형 선발 최저 기준(1,2유형 공통)**

- ※ 국가장학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하여야만 선발이 됩니다.
  - 1. 소득분위 8분위 이내
  - 2. 성적기준
    -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 백분위 B학점(80점)이상(이수평점 2.75, F학점, 재수강실패과목 포함)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 성적으로 반영됨.
    - B학점(80점) 미만 ~ C학점(70점) 이상인 기초/차상위 대학생
    - C학점(70점) 미만인 장애대학생
- ※ 교내 사랑의실천 장학 대상자도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함.

## VI. 장학금 지급방법

### 1. 등록금 고지서 감면 대상자

- 가. 등록금 고지서발급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
- 나. 등록금 납부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
- 다. 분할납부 완납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

### 2. 장학금 환불 대상자 :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- 가. 등록금 납부 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
- 나. 무등록 복학자가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경우

### 3. 환불 방법

- 가. 학교 포털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.

※ 장학금 환불 계좌 : HY-IN 장학환불계좌(환불계좌 등록방법 : HYIN->신청-등록장학-본인계좌관리)

단,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재단 또는 대학에서 상환하며  
이외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시 이중수혜로 2유형 또는  
다음 학기 국가 장학 미선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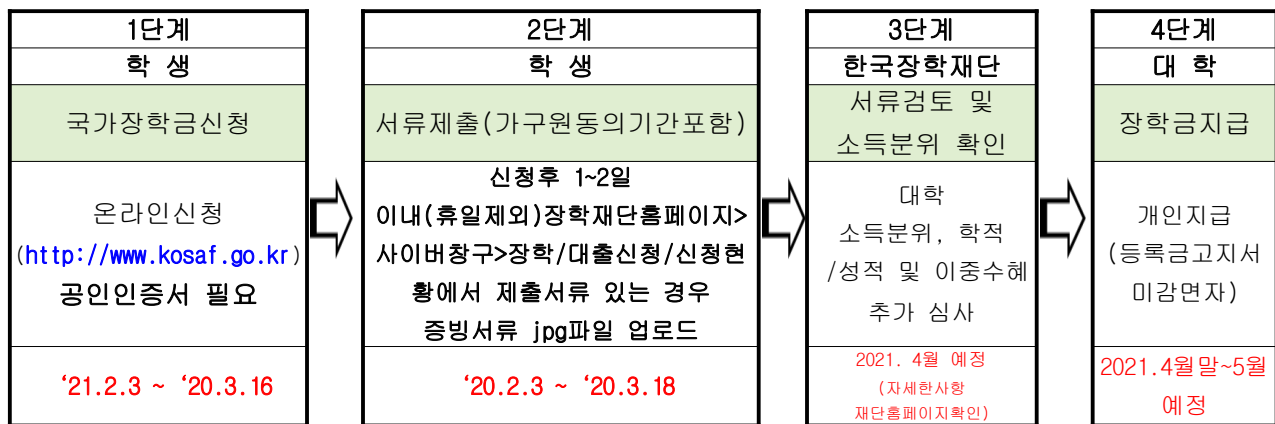
- 나. 지급제외 :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 이하,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제외

## VII. 이중지원 방지 준수 의무

- 가.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함

\*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  
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 할 것

## VIII. 국가장학 신청 및 지급 절차 : 자세한 신청 절차는 매뉴얼 참고



## IX. 신청 오류 사례

국가장학금(1·2유형)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총정리

### CASE 1. 타인 명의로 신청

-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시 오기로 인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
☞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

### CASE 2. 소속대학을 잘못 입력

-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으로 장학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
☞ 반드시 **정확한 소속대학**으로 신청

### CASE 3. 부정확한 학적 입력

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
- '20년 1학기 편입생이' 21년 1학기에도 "편입"으로 신청하는 경우-> "**재학생**"으로 신청  
'20년 1학기 신입생이' 21년 1학기에도 "신입"으로 신청하는 경우-> "**재학생**"으로 신청  
☞ '21년도 1학기에 '재입학생'만" 재입학 "으로 신청하고  
이외의 모든 재학생은 "**재학생**"으로 신청

### CASE 4. 다자녀 우대를 못받는 경우

- 학생기준 미혼/기혼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
☞ (미혼) 형제/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, (기혼)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

### CASE 5. 서류 미제출

-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
☞ 신청 후 ('21.3.18(목) 18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> 사이버창구> 서류제출> 서류제출현황에서  
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

### CASE 6. 가구원 정보 제공 미동의

- 신청완료 후 가구원정보제공 미동의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
☞ 서류제출일('21.3.18(목) 18시까지) 가구원동의(부모님 각각 또는 배우자)를 완료하여야  
장학금 소득분위 확정됨

## [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안내]

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(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)으로 수혜한 학자금(든든학자금, 일반학자금, 농어촌무이자융자,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,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)과 국가 및 교내·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.

등록금 지원 목적(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)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히, 2012-1학기 ~ 2020-2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미상환한 학생의 경우 2021-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예정이오니,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이중수혜 확인방법>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) → 사이버창구 → 이중지원 → 이중지원현황  
(※ 현재까지 수혜한 학자금 지원 내역은 안내되나 초과금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.)

#### 1. 초과 수혜한 학자금 온라인 상환방법(든든학자금, 일반학자금, 농어촌무이자융자)

: 한국장학재단(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)로그인 > 사이버창구 > 학자금 대출관리 > 학자금 대출상환 > 중도상환 >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> 가상계좌 채번(생성) 후 대출상환  
(오프라인 상환 방법 : 1599-2000(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)번으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

단,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)

※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

#### 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-2000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한국장학재단 콜센터, 평일 오전9시~오후6시 운영)